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5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김한규・이원택・문정복

한준호 • 박홍배 • 안태준

민병덕 • 신정훈 • 모경종

문대림 • 진성준 • 정준호

강경숙 · 이용우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제1항 전단 중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 범 죄 또는 성희롱"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를 "절차,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로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공무원등"이라 한

- 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공무원등에 대하여 근 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전보 등 적절한 조치. 다만, 피해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가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
	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u>고</u>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
	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u>아니 된다.</u>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	
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u>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u> 을	<u>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u>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u>직장 내 괴롭힘</u>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	
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	
지 아니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③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
 -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피 해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공무원등에 대하여 근무장 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 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 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 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전보

<신 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바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등 적절한 조치. 다만, 피해공 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 2. 가해공무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정계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비밀을 피해공무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 <u>⑧</u> 제7항-----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
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⑨</u>
절차,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
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